

입학전형전담교수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(이하 ‘본교’ 라 함) 입학전형 전담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의 입학전형 전담교수는 입학사정관전형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의미한다.

제3조 (자격) ① 입학전형 전담교수의 자격은 학교가 부여하는 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경력이 있어 본교 교육 및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.

② 입학전형 전담교수는 사립학교 교수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입학전형 및 교육관련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학교가 요구하는 별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.

제4조 (소속) 입학전형 전담교수는 입학처 입학사정단 소속으로 둔다.

제5조 (임용 및 재계약) ① 입학전형 전담교수는 공개채용으로 임용하며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

② 입학전형 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, 재계약 조건 충족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입학전형 전담교수의 재계약은 강의평가 및 부서장에 의한 업무능력 심사평정을 통과한 경우에 한한다.

제6조 (의무 및 금지) ① 입학전형 전담교수는 학내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본교의 교육목적 달성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.

② 입학전형 전담교수는 매학기 주당 3시간 이하의 강의를 할 수 있다.

③ 입학전형 전담교수는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한 학생선발, 입학사정관전형 기획 및 평가방법 개발, 입학사정관계 관련 학생선발 연구 및 분석, 입학사정관계 설명회 및 상담, 입학사정관계 관련 교육 등 입학사정관전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본교에서 요청하는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입학전형 전담교수는 임용기간 중 영리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타 직업에 겸직 종사할 수 없다.

제7조 (공정성 확보) ① 입학전형 전담교수는 입학전형에 있어서 도덕성과 청렴유지 등 최고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.

② 입학전형 전담교수는 입학업무 수행시 알게 된 개인신상정보 및 입학관련 제반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.

③ 입학전형 전담교수는 대학의 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3년 동안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고,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.

제8조 (보수) 입학전형 전담교수의 급여는 별도로 정한 급여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9조 (처우) ① 입학전형 전담교수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기타 채우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제10조 (재원) 입학전형 전담교수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국고에서 집행하되, 교비 집행시에는 재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 (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, 정관 및 본교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정 <2011 제9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1조, 제3조제2항, 제4조, 제5조제1항, 제6조, 동조제2항 및 제3항 개정, 제7조제3항 신설 <2012 제10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명,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 개정 <2014 제2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 개정 <2015 제15차 교무위원회>)